

8. 침정공파(僉正公派)

수 壽, 10세, 침정공파 중시조 훈련침정(訓練僉正)

1528년(중종 23년)에 태어났으며 자(字)는 영령(永齡)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 훈련침정(訓練僉正)의 벼슬을 했으며, 부인은 결성 장씨(結城 張氏)이고 공의 묘소는 개천(价川)에 있다고 전한다.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경헌공 고려의종.명종대 (1170-90년대)	德秀 덕수 상서공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 1215卒	元烈 원렬 太僕尹 태복윤 고려 충렬왕 대	敬輿 경여 典客令 전객령	嶽(금) 左贊成 (좌찬성)	1 致龍(치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	星州牧使派성주목사공파/南海縣令派남해현령공파/(全州)判官公派(전주)판관공파/進士公派진사공파/司評公派사평공파/判尹公派판윤공파/昭威將軍公派소위장군공파					
					2 繼龍(계룡) 令同正 영동정	環(환) 郎將(낭장) 세종 23년 (1441~	仁亨인형 主簿주부 세조 12년 (1466~	壽수 訓練僉正 훈련침정 중종23 (1528~	1 희황希晃 (1557~	1 仁澤인택 訓練僉正 훈련침정 (1572~	
										2 義澤의택	
									3 예택禮澤		
									2 仲澤중택		
						3 信敏신민					
						義良(의량)義良公派의량공파					
						仁良(인량)禹績(우직) 義州府尹	府尹公派부윤공파				
						尙文(상문)啓山(계산) 保功將軍	保功將軍公派보공장군공파				
					珍(진) 進士진사	明遠(명원) 兵馬節度使 조선세종대	兵使公派병사공파				
瑞龍(서룡) 左丞宣 좌승선	左承宣公派좌승선공파(서룡공)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1 仁澤 인택	夢弼 몽필 절충장군 (1594~	繼宗 계종 호조참의	允武 윤무 (1631~	應三 응삼 (1671~	鳳漸 봉점 (1697~ 鳳謙 봉겸 이암선생 (1709~	在默 재묵 비암선생 충청도사 (1735~	永善 영선 장사랑 (1755~	錫孚 석부							
2 義澤 의택	一星 일성	廷亮 정량	尙廉 상렴	應弼 응필	光昊 광호	天永 천영	致權 치권	采洙 채수	始弼 시돈	준혁 俊赫 사회주의운동가 정치인					
3 예택 禮澤	신일 愼逸 (1602~	계훈 繼勳 (1634~	덕항 德恒 (1671~	운창 運昌 (1695~	광두 光斗 (1724~	재관 在觀 (1747~	영륜 永倫 (1767~	응수 膺洙 시조 심묘기 (춘암) (1792~	성근 聖根 (1822~	희봉熙鳳 (1847~	기정基正 한말의병 간부 (1880~	승중勝鍾 계자系子 국무총리 3대대총회장 7수보서문작성	3. 宣海 선해		
											기명 基明 (1883~	3 浩鍾호중 4 승중勝鍾 출계基正	1 振海진해		

2	1	1	1	1	2	1	1	1	4	1	1	2	3	3	1
仲澤	魯績	先春	起善	琴鳳	弼弘	就三	處仲	海成	應祥	承律	始林	桂鳳	允洪	慶鎬	예지
중택	노적	선춘	기선	금봉	필홍	취삼	처중	해성	응상	승률	시림	계봉	윤홍	경호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信敏	忠立	彦邦	尙德	泰柱	德起	克春	鐵性	養淳	鳳相	聖熙	采鎭	淵穆	英植	炆錄	
신민	충립	연방	상덕	태주	덕기	극춘	철성	양순	봉상	성희	채진	연목	영식	경록	

윤무 允武, 15세, 1631(인조9)년생, 개천 출신, 1660년(현종1년)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으로 급제 (출전: 경자식년사마방목 庚子式年司馬榜目)

봉점 鳳漸, 17세,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1697년(숙종肅宗 24년)에 태어났다. 1723년(경종景宗 3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했으며, 成均

현봉점의 식년시 문과 합격 기록

[문과] 경종(景宗) 3년(172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6위 (16/35)

생년

정축(丁丑) 1697년 (숙종 23)

합격연령

27세

본인본관

성주(星州)

거주지

개천(价川)

선발인원

35명 [甲3 · 乙7 · 丙25]

전력

유학(幼學)

관직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문과시제

논(論) : 진신서불여무서
(盡信書不如無書) (註)

[부(父)]

성명:현응삼(玄應三)

[조부(祖父)]

성명:현○○(玄○○)

[증조부(曾祖父)]

성명:현○○(玄○○)

館直講(성균관직강)을 지내셨고 1746년(丙寅年)에 돌아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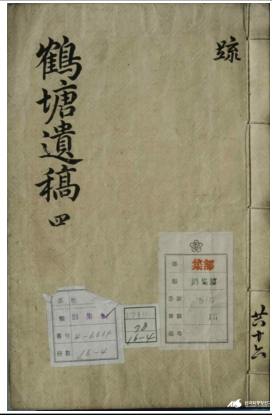
- 2 -

(註) 계묘 식년시(癸卯 式年試)의 시제(試題) 盡信書不如無書는 맹자(孟子)의 말로 “책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차라리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이 시제에 대해 논하는 문장을 제한된 시간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과거 시험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 승정원일기에 보면 현봉점(玄鳳漸)에 대한 기록이 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1년 을사(1725, 옹정), 11월 19일(계축) 홍중우(洪重禹)·이집(李湑)을 승지로, 서종섭(徐宗燮)을 필선으로, 홍중현(洪重鉉)을 판교로, 이명희(李命熙)를 충훈부 도사로, 이유(李瑜)를 겸 교서관 교리로, 이한겸(李漢謙)을 의금부 도사로, 홍치중(洪致中)을 형조 판서로, 정형진(鄭亨晉)을 종묘서 영으로, 이도진(李道鎭)을 공조 좌랑으로, 경성회(慶聖會)를 병조 참지로, 조도빈(趙道彬)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현봉점(玄鳳漸)을 학윤(學諭)에 단부하였다. 좌승지에 이기진(李箕鎭)을, 우승지에 신방(申昉)을, 좌부승지에 홍중우(洪重禹)를, 우부승지에 조영세(趙榮世)를, 동부승지에 이집(李湑)을 단부하였다. 반송사 권엽(權爍)을 이번에 자헌대부로 초자(超資)하였다. *학윤(學諭:조선시대 성균관에 속한 종구품 벼슬)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1년 을사(1725, 옹정), 11월 20일(갑인) 오늘 모화관에 거동할 때 현봉점(玄鳳漸)을 수궁 가주서(守宮假注書)로 삼았다. *가주서(假注書:조선시대 승정원에 소속된 정7품 주서의 임시 관직)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3년 정미(1727, 옹정5) 1월 5일(임진) 수석을 차지한 학정(學正) 현봉점(玄鳳漸)에게 반숙마(半熟馬) 1필을 사급하라는 비망기 *학정(學正:조선시대 정3품 아문인 성균관의 정8품 관직, 유생의 풍속을 담당하는 교관직)

집필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 조상경(趙尙綱)의 시문집 학당유고(鶴塘遺稿)에도 현봉점이라는 개천(价川) 거주 인물이 나온다.

鶴塘遺稿 冊十一 / 日記 癸卯 [正月] 二十四日。晴。嘉山倅魚有琦持錢三兩，酒一壺，數種魚饌來見。兪生，李樞，朴醫，安命說，价川居儒生玄鳳漸與其四寸來。譯官鄭德崇來現。寧邊留醫吳敬大邀來。適聞雲山謫客有病勸送。寧邊倅李基祚來訪。渭原書問。送眞荏十斗。	
---	---

봉겸 鳳謙, 17세,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봉점의 동생, 자(字)는 계진(季眞) 號는 이암(彝庵)이다. 1709년(숙종 36년)에 태어났고 1778년(정조2년)에 돌아가셨다. 조선 후기에 익위사세마, 경영관, 지평, 집의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족보에 의하면 ‘타고난 자태가 극히 높고 듣고 깨달음이 매우 뛰어났다. 6세에 소학을 받고 한번 읽어보고는 곧 외웠다. 커서는 구암 윤봉구의 **문하**에서 집사 역할을 했다. 선생은 매우 칭찬하며 한탄하기를 遯庵(돈암) 이후_서도 유학의 책임을 모두 가지겠구나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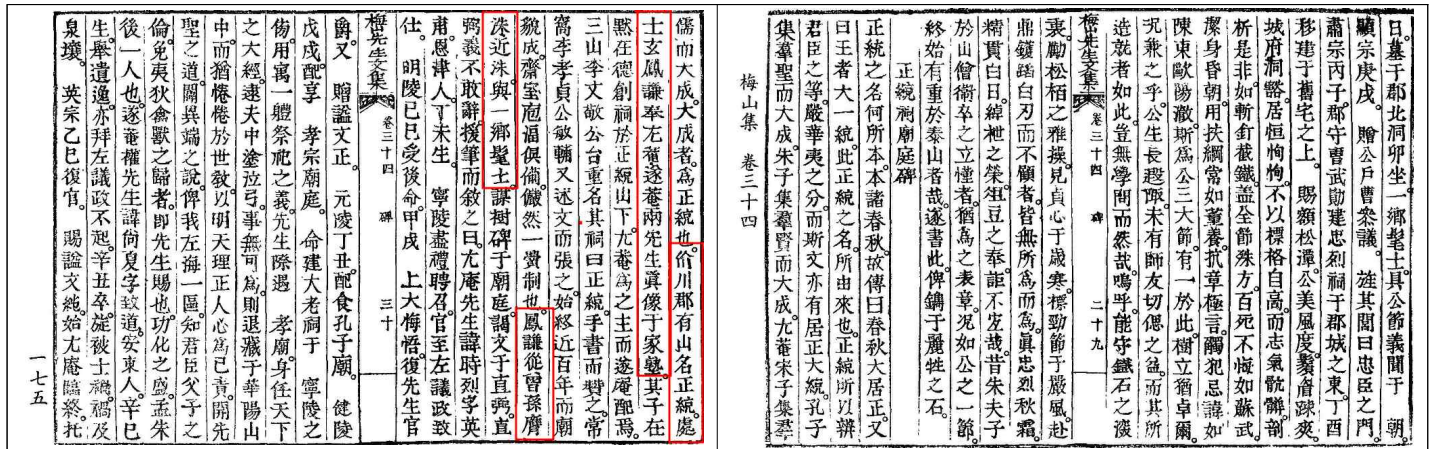
다. 마침내 尤遂(우수) 양선생의 영정을 살던 곳에 봉안하고 대대로 이어서 후진을 가르치니 생도가 무더기로 모여들었다. 분하의 정취(汾河之風)가 있었다. 삼산 이공이 관찰사가 되어 뽑아 쓰려고 건의하고자 했으나 임금에게 여쭙는 일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죽었다. 그후 누강 정공이 관찰사가 되어 조정에 아뢰었으나 당시 일이 질척거리고 막아 포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경향의 선비와 벼들이 지금도 애석하게 여긴다. 저술로는 경서와 예서 이기설 등이 세상에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

- * 구암(久巖) 윤봉구(尹鳳九, 1683~1767) : 병계(屏溪), 성리학자 권상하의 문인으로 정묘보 서문 작성
- * 돈암(遯庵) 서한정(徐翰廷, 1407~1473) :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돈암일집』 등의 저서를 남겼으며, 유교 학문 발전에 기여했다
- * 우,수 양선생 : 상리학의 대가 우암(尤庵) 송시열(1607~1689)과 송시열의 수제자이자 기호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1721)
- * 분하의 정취(汾河之風) : 함께하는 즐거움이 극에 달한다는 한무제 고사
- * 삼산 이공(三山 李公) : 이태중(李台重, 1694-1756) 지방 목민관. 시호은 문경(文敬)
누강 정공(樓江 鄭公)은 확인 불명.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天姿極高聽悟絕倫六歲受小學覽輒卽誦及長執贊于久庵尹先生之門先生大加稱嘆曰遯庵以後西路斯文之責盡在矣遂以尤遂兩先生影幀奉安于所居世宗齊教授後進生徒仝集宛有汾河之風三山李公爲按使欲建白擢用不及 筵達而卒其後樓江鄭公爲道伯奏聞于 朝當路沮泥未蒙褒典京鄉士友至今嗟惜所著經禮理氣等說行于世

홍직필(洪直弼)의 유고집 『매산집』(梅山集)에 현봉겸((鳳謙)의 이름이 보인다.

梅山先生文集卷之三十四 / 碑	
正統祠廟庭碑	
正統之名何所本。本諸春秋。故傳曰春秋大居正。又曰王者大一統。此正統之名。所由來也。正統所以辨君臣之等。嚴華夷之分。而斯文亦有居正大統。孔子集羣聖而大成。朱子集羣賢而大成。尤菴宋子集羣儒而大成。大成者。爲正統也。价川郡有山名正統。處士玄鳳謙奉尤菴，遂菴兩先生眞像于家塾。其子在默在德創祠於正統山下。尤菴爲之主而遂庵配焉。三山李文敬公台重名其祠曰正統。手書而贊之。常窩李孝貞公敏輔又述文而張之。始終近百年而廟貌成。齋室庖湍俱備。儼然一覺制也。鳳謙從曾孫膺洙，近洙。與一鄉髦士。謀樹碑于廟庭。謁文于直弼。直弼義不敢辭。援筆而敘之曰。(이하 생략)	



재목 在默, 18세.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비암선생, 충청도사 봉겸의 아들, 조선 후기 문신이다. 자는 초백(楚伯)이다. 1735년(영조11)에 태어났다. 증조부는 현윤무(玄允武)이고, (誤記로 보임, 증조부는 현창무昌武) 조부는 현응삼(玄應三)이다. 부친은 현봉겸(玄鳳謙)이다. 1768년(영조44) 식년시에 병과 37위로 문과 급제했다. 1768년(영조44) 4월에 승정원가주서(承政院假注書)로 임명되었다. 1781년(정조5) 10월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임명되었다. 1794년(정조18) 7월 가묵으로 바른말을 구하는 임금의 구언(求言)에 대해 양전(量田)·환곡(還穀)·파발(擺撥) 등을 내용으로 상소하였다. 1797년(정조21) 6월에 예전 직함을 빙자하여 관아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사사로이 민가를 헐었다는 혐의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박종갑(朴宗甲)의 탄핵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지방 수령을 무고했다는 혐의로 관서안사어사(關西按查御史) 여준영(呂駿永)의 탄핵을 받았다. 족보에는 충청도사(忠淸都事)를 지냈으며 경학과 문장이 뛰어났으며(경학문장지절문우세經學文章之節聞于世) 1797년(정조 22년)에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있다.

현재목의 식년시 문과 합격 기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립 중앙도서관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卷之十六(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문과] 영조(英祖) 44년(176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37위 (47/57)		
자(字)	초백(楚伯)	
생년	을묘(乙卯) 1735년 (영조 11)	
합격연령	34세	
본인본관	성주(星州)	
거주지	미상(未詳)	
선발인원	57명 [甲3 · 乙7 · 丙47]	

전력
문과시제

유학(幼學)
어제(御題)부(賦) : 친극자미
(親極滋味)

[부(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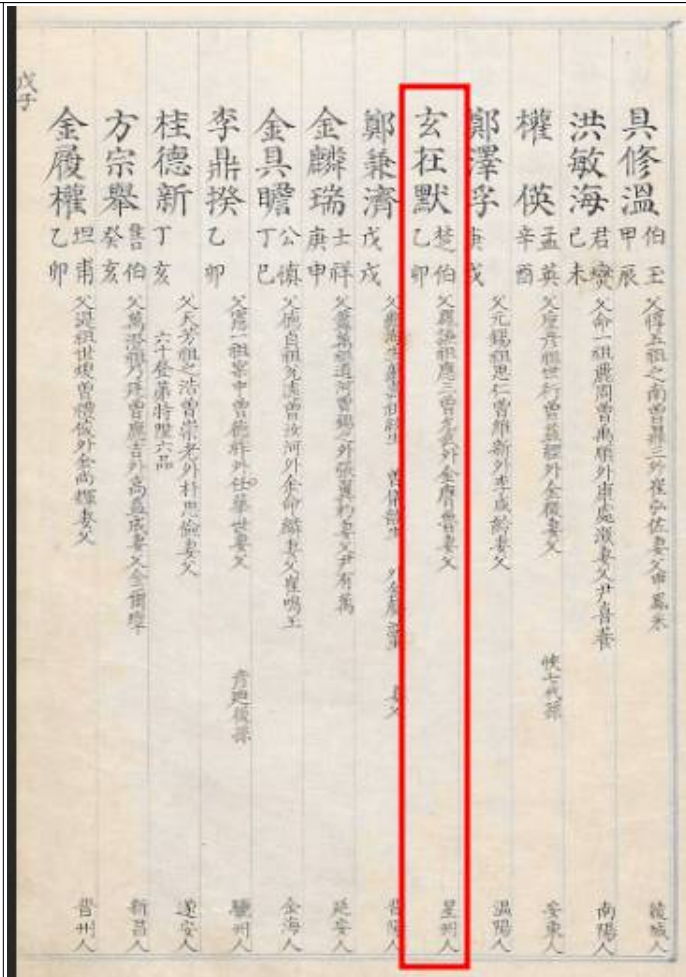
성명: **현봉겸(玄鳳謙)**

[조부(祖父)]

성명: **현응삼(玄應三)**

[증조부(曾祖父)]

성명: **현윤무(玄允武)** => 창무(昌武)의 오기(誤記)



조선왕조실록, 번암집, 일성록 등에 현재목의 기록이 보인다.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23일(무신) 구언에 응답해 전(前) 전적(典籍) **현재목**이 상소하다

전(前) 전적(典籍) **현재목(玄在默)**이 상소하기를, “관서의 양전(量田)은 이미 햇수가 오래 되어 경계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측량을 하게 되면 간사하고 교활한 향리들이 속임수를 쓸 수 없으므로 위로는 토지 대장에서 토지가 누락되는 실수가 없고 아래로는 이종으로 세금을 바치는 억울함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측량을 다시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곡으로 인한 폐단의 원인은 각 고을의 장부에 기재된 곡식의 수량이 많고 적음이 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법칙을 정하여 만들어서 곡식을 팔 것이 있으면 곡가(穀價)의 고하를 막론하고 먼저 곡식이 가장 많은 고을에서 팔기 시작하여 차차 팔게 하면 몇 해 안 가서 각 고을의 곡식의 총액이 균일하게 될 것입니다. 관서의 각 고을에 비치된 돈의 폐해는 또한 백성들의 큰 폐단입니다. 어리석은 신의 소견으로는 다섯 집이 1통(統)이 되는 법을 엄하게 밝혀서 통마다 나누어 주면 담당 아전들이 조종하면서 뇌물을 받는 폐단은 저절로 고쳐질 것입니다. 관서의 군정에 대한 일은 다른 도에 비교하면 더욱 중대한데 일단 순찰하는 일을 중지한 뒤부터 무기가 녹슬게 되었지만 보수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편대의 사람 중에 도망친 자리를 곧바로 채워넣지 않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옛 제도를 밝히도록 하소서. 서로(西路)에 파발을 두는 것은 대체로 변방 백성들의 급한 경보 때문인데 지탱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말하면 황해도 같은 곳이 없고 파발꾼의 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말하면 평안도와 같지 못하기 때문에 황해도 백성들로서 한 번 파발꾼에 들어간 사람은 고향을 등지고 떠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평안도 근래의 예에 따라 파발꾼의 샹과 잡물을 묘당으로 하여금 적중하게 헤아려 지급하도록 하소서. 영남의 연일(延日)은 고을의 터가 낮고 좋지 못하여서 임자년 큰 홍수에 거의 떠내려가고 잠겨버렸으니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적당한 시기에 옮겨 세우도록 하소서. 삼일포에서 소나무를 베고 개간한 일은 관찰사와 수령들을 논죄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에 무식한 산골의 농

민들이 애써 농사를 지었다가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게 되었으니 자못 가련한 일입니다. 천천히 가을에 농사가 수확된 뒤를 기다려 시행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도를 팔역(八域)으로 나누고 고을을 3백 개로 구분해 놓았지만 그 폐단은 곳곳마다 다 있으니 의정부로 하여금 각도와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 각 조항에 따라 비변사에 보고하여 폐단을 바로잡으면 재변을 막고 병폐를 없애는 방도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비답하기를, “너는 먼 지방에 사는 문신으로 바른 말을 구하는 날에 먼저 전교에 응했으니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 조항에서 가려 쓸 만한 것이 많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情及時務建宜矣三日浦伐松起整事至有道臣守宰論罪之舉無識曉動
苦作農一朝失業殊甚可於徐待秋成後舉行尚未晚也道分八域邑列三百
其為縣鎮處皆然宜令廟堂行會各道各邑俾各條陳弊于備局隨筆端筆
必有補於研究蘇轍之道矣批曰爾以道土臣求言之曰首先應言極為可
嘉諸條多有採用者即令廟堂票處○備邊司啓曰因大司諫林濟遠疏請監
試初試退行事有草記之命矣一早雖如此秋事姑未可判大比科之進行固
不可遽然議到且今期限已迫鄉儒之高占舍館前期數十日擬赴邑諸路
同然今若退期則其在儒生之勞費恐反無益而有害原任大臣之意亦同論
置之從之○已酉禁院請診不許○進御加味連魁飲○副修撰李錦夏上疏
曰願令國事一言以蔽之曰無可奈何望之人身元氣漸微癯瘦神丹妙
劑莫可下手而若其景危惡至急迫不可尋刻坐視者即謂計之不行也嗚呼
之方重必嬰二豎其一全鍾秀是也噫彼鍾秀十罪萬惡罄竹難寫而蓋莫非
人所不忍言之言人所不忍為之事而人所不忍聽不忍當之境也舉兵之速
夢詭焉之鏡雲人猶有聲罪而形言至於鍾秀人不忍聲罪而形言乃知人臣
造罪到今極重地頭反不能損其毫末也貫盈既久包藏屢綻流弊之行無幾

書即我東春秋也國當守之不撓而近來隄防漸素臣謂凡關係於明義錄者
牢守一切之法無或撓季宜矣今年推恩宴聖上廣慶壽喜之舉而抄啓之
際不無艱難之華臣謂嚴飭鈐曹俾勿如前即今悠悠萬事莫如保衛聖躬修
省之中宜軫調將之體消弭之聲益楚慎攝之節則古人所謂心氣和而天
地之和應者亦在於此矣批曰諸條當留意聞或涉禁畧有刪拔之句不得已
賜批而明義錄修明堅守豈待爾言○前典籍玄在縣上疏曰關西量田已至
辛父元無疆界之區則今若一經改量奸弊稽吏無所容傷而上而無漏結之失
下而無疊稅之冤此為改量之不可少也還穀縣源以各邑穀多寡之不一
均也定為一切之法凡有異言無論穀價之高下先就最多邑次次發賣則不
出數年各邑之穀概可以均乎矣西開各邑庫錢之弊又是民瘼之大者以臣
愚見嚴明五家統之法逐統分給則監色等糧縱索賄之弊自歸於無矣關西
戒政視他尤重一自停巡之後軍物朽敗而無意修補行伍流亡而不即填差
宜令廟堂申明舊制西路之置撥蓋為邊民之營慮也而難支之端莫如海西
馬料資給不如關西故海西民之一入撥軍者無不流離依關西近例馬料雜
物令廟堂量宜區劃嶺南之延日邑基地甚卑汚土于大水幾盡浸沒詳探民

번암집 제29권 / 헌의(獻議)

개천 사람 현재묵의 일에 대한 헌의〔价川人玄在默事議〕

현재묵이 문관(文官)이라 사칭하면서 향곡(鄉曲)에서 폐단을 일으킨 것은 죽일 만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 신이 감사를 맡고 있을 때에 익히 들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여 보고한 장계를 보건대, 조사하는 뜰에서 성을 내어 꾸짖으며 말한 것이 절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가 손수 쓴 패자(牌子) 가운데 “군기(軍器)를 마음대로 꺼냈습니다.”라는 말과 “무신년 이후로 처음 보았습니다.”라는 등의 말은 흉악하고 패려하여 하지 못하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고을 수령을 위협하여 내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말이 절로 남을 무함하는 악역(惡逆)의 죄에 빠지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 죄수의 공초를 통해서도 이미 모두 의심할 것이 없으니, 현재묵의 죄는 오직 남을 무함한 데 대한 형률을 적용하여 반좌율(反坐律)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죄수들에 대한 처결은 어사로 하여금 경중에 따라 법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주-D001] 개천(价川) …… 헌의:

현재묵(玄在默)의 일은 다음과 같다. 개천 군수 신선응(申善應)이 외창(外倉)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영접하지 않은 일로 개천군의 중군(中軍) 김회항(金晦恒)이 향임들과 언쟁을 벌였는데, 그때 무사가 양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향임들이 수령에게 김회항을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청한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재묵이 주동하여 감사에게 의송(議送)을 바치고, 유생(儒生)들에게 통문(通文)을 돌리고, 형리청(刑吏廳)에 패자(牌子)를 보냈다. 이때 감사에게 바친 의송에서 수령을 무함한 구절이 문제가 되어 정조가 여준영(呂駿永)을 평안도 안사 어사(平安道按查御史)로 삼아 조사하게 하였다. 《日省錄 正祖 21年 6月 10日, 10月 6日》 1797년(정조21) 10월 6일 정사에서 형조가 현재묵의 일에 대해 대신들에게 의논한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이 글은 당시 좌의정으로 있던 번암이 헌의한 내용이다.

《正祖實錄 21年 10月 6日》《日省錄 正祖 21年 10月 6日》

朴承宗復官當否議
 朴承宗當 西官之變其欲出力而衛護之者難出於朝野散錄而至若名臣碩輔之親見其時事實爲之訟冤於文字之間刊布遺集者班班可考此足爲信而有徵及當 反正之初與其子自與同時自盡亦未始非盡心所事者以其身爲首相沈沈富貴其納權勢不能格君主之非其致 宗社傾覆得罪於尚論之士則此固無辭可辨而責備乃所以爲賢者豈可人人而以其是爲貴也況升書之不靈官爵之不復卽所以勸導臣者既知其與逆臣有異而以其生不能扶顛支危被之以勸導之律者揆以事理恐不當如此今以事係二百年有所持難於雪其冤枉者固宜有此等議論而以臣愚見前後名碩之言有是之昭布而特以其後孫微弱無以顧天遂至於殆近二百年而幽鬱不得伸矣此尤可矜不可以此而又多之因循也 明問之下不敢泯泯畢陳述見不勝惶悚伏惟 上裁

价川人玄在默事議
 玄在默之稱以文官作契鄰曲可死之罪不一而足臣於按藩時稔聞而詳知矣今以按查之狀見之不

樊巖集 卷二十九

特其倉庭喧嘩之言自歸難赦之科其手書牌于中肆發軍器與戊申後初見等說凶惡悖戾無所不至渠則自以爲以此成言可以脅逐官長而不知其言之自陷於誣人惡道諸因之招既皆無疑則在默之罪惟當以誣人之律反坐而已餘外諸因決處使繡衣從輕重如法施之似是不可已之事矣

安峽殺獄議
 殺獄從古有限而行凶節次之至慘至毒未有如今此李壇者矣其女雖曰失行墮既非其真又非其夫而只憑安國太所傳之言初不究發遽已聚族殺而高處其屍親之或有後言招致倫理滅絕之具性大悍爲同謀然後誘引其女鉗之又縛之又鉗雖殺猶嫌子不至若是之酷而既投之江猶且不足以十餘大石壓其身體及其孫孫之口之鼻猶不解脫苟有人性豈可忍乎殺人而無償命則已如不然償命之律不施於墮而受於何施之或以性大之徑斃處有一般二償之惠而此則有不然者性大以同生之甥其妹生而默棄如遺其妹死而不惟不少挽止乃反加功於行凶之際其罪實不容誅刑而斃之豈由於滅絕倫紀何嘗以具女之死償性大之命

樊巖集 卷二十九

五七七

* 번암집 (樊巖集) :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의 시 · 소차 · 서계 · 서(序) 등을 수록한 시문집. 1791년(정조15) 정조의 어명과 「어정범례(御定凡例)」에 의해 편성된 것이다. 이 책은 수권(首卷)에 정조의 어제 어필(御製御筆)로 되어 있는 「서번암시문고(書樊巖詩文稿)」, 「어정범례」, 1800년에 작성된 「부주」, 이어 수권 상으로 사륜(絲綸) 46편, 수권 하로 사륜 51편 및 어찰(御札) 9편이 실려 있다.

일성록(日省錄) 정조 21년 정사(1797) 10월 6일(신축)
 개천(价川)의 죄인 현재묵(玄在默)은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형배(刑配)하고 그 나머지 각 사람은 경중을 나누어 감처(勘處)하라고 명하였다.
 ○ 평안도 안사 어사(平安道按查御史) 여준영(呂駿永)의 장계에,
 “신이, 개천군의 현재묵 등이 고을 수령을 무함한 일을 조사하기 위해 9월 24일에 개천 군에 도착하여 덕천 군수(德川郡守) 서홍보(徐弘輔), 맹산 현감(孟山縣監) 김기풍(金基豐), 은산 현감(殷山縣監) 이석하(李錫夏)를 별도로 참사관(參查官)으로 정하고, 신문해야 할 각 사람들에게 규례대로 문목(問目)을 내어 공초(供招)를 받았습니다.
 김회항(金晦恒)은 공초하기를 ‘올해 4월 수령이 외창(外倉)에 나갔다가 본읍(本邑)의 군기(軍器)에 대한 일로 추고를 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황송한 마음으로 관아에 돌아왔으나, 향청(鄉廳)의 향임(鄉任)들이 나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사사로이 말하기를 「오늘 관아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때와는 다른 일인데도 시임 향임들이 나와 영접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의 체모로 볼 때 분노에 찬 말을 마구 내뱉어서는 안 된다.」 하고, 청지기를 시켜 한 차례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임 향임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서 관아의 뜰에 들어와서 수령에게 고발하였으므로 관아에서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말하기를 「양반이 상놈에게 모욕을 당했다.」 하였으므로, 제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향임의 자손에 불과하고, 나는 무사(武士)의 신분이지는 하지만 본래 사족(士族) 출신인데 어찌 감히 능멸하는가.」 하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니, 관아에서 그들을 용서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를 잡아들여서 분부하기를 「이번에 향임과 무사 사이에 분쟁을 벌인 실마리가 너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죄가 없을 수 없다.」 하고, 곤장을 치고 중군(中軍)의 직임을 태거(汰去)하였으며, 이어 수금하였습니다. 그 뒤에 문득 들으니, 현재묵 등 향임들이 수많은 향인(鄉人)들을 거느리고 윤음(綸音)을 받들고서 객사(客舍)에 일제히 모여 장유(長幼)의 분별과 귀천(貴賤)의 분별에 대한 일로 수령에게 고하고 저를 죽이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옥중에 갇혀 있었으니, 어떻게 나가서 감히 받들고 온 윤음을 빼앗았겠습니까. 향인을 꾸짖고 모욕했다는 죄목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관아의 뜰에서 마음껏 학대했다는 이야기는 오로지 모함일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좌수(座首) 현광석(玄光碩) 등은 공초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향임으로서, 올해 4월에 고을 수령이 별창(別倉)에서 관아로 돌아올 때 나가 영접하지 않은 일로 김회항이 온갖 말로 모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아의 뜰에서 일제히 호소하여 그의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잡아들일 때에 그가 더욱 여지없이 모욕을 하였는데도 고을에서 엄중히 다스리지 않고 저희들을 물리쳐 보내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러 나와 향청을 비우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소지(所志)를 바쳤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과연 김회항은 곤장으로 다스리고, 저희들은 붙잡아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이 멀어서 미처 대령하지 못했는데, 명령을 거역하는 줄로 알고 또 사나운 차인(差人)을 보내어 저희들을 수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뒤 향임들의 통문(通文), 패자(牌子), 의송(議送) 등의 일은 갇혀 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참여하였겠으며, 향임을 맡고 있는 몸으로 어떻게 감히 부화뇌동하여 호응할 셈을 하였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한광엽(韓光燁) 김회항의 외숙부)은 공초하기를 ‘향인들이 김회항이 꾸짖고 모욕한 일로 수치를 씻으려고 하며, 현재묵 형제가 상복(喪服)을 입은 사람으로서 800여 명을 거느리고 윤음을 받들고 와서 향회(鄉會)를 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관가에 고하니 관가에서 말하기를 「윤음은 체모가 매우 경건한 것인데, 향인이 어찌 감히 정당한 이유 없이 받들고 오는가.」 하고 윤음을 동헌(東軒)에 봉안(奉安)하였습니다. 그러자 향인들이 윤음을 빼앗아 갔다고 하면서 관아의 뜰로 난입하여 제멋대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김회항을 박살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의 집을 허물겠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관가에서 말하기를 「김회항의 죄가 어찌 박살할 정도까지 되겠는가. 집을 허무는 것도 조

정의 금령(禁令)이 있다.’ 하면서 엄한 말로 물리치니, 향인들이 곧바로 김회향의 집으로 달려가서 일시에 집을 허물었습니다. 1000명 가까운 향인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저를 구타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저의 아들 한공우(韓公羽)가 칼을 빼 들고 와서 구원하니 일시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횡사(橫死)를 면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한공우는 공초하기를 ‘저의 아버지가 구타를 당할 때 저에게 말을 전한 자들이 모두 아버지가 벌써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통분하여 곧바로 복수하려는 생각에 청지기의 환도(環刀)를 급히 뽑아 들고서 좌우로 휘두르느라 누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매부도 상처를 입었으니, 다른 사람이야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분노에 찬 기세로 칼을 휘두르다 보니 자연히 5, 6인이나 상처를 입히게 되었으나, 황급한 상황이라서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습니다. 향인들이 이를 빌미로 삼아 비난하는 말을 하고 관가를 부추겨서 저를 잡아다 가두게 하고 감영에 보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들으니 상처를 입은 자는 몇 사람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향인들이 기어이 무함하려고 「군기를 멋대로 꺼내고 장교(將校)와 결탁하였다.」라는 죄목을 저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그들이 기어이 이러한 말까지 한 것은 막중한 일을 빙자하여 저를 성토하고 관가를 무함하려는 것이었으니, 그들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흉악하고 사특합니다.’ 하였습니다.

김처양(金處讓) 등은 공초하기를 ‘현재흠(玄在欽)이 통문을 보내온 뒤에야 김회향이 꾸짖고 모욕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을에 들어가니 800인의 향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현재묵 형제가 윤음을 받들고 와서 강습하려고 하다가 장교들에게 빼앗겼으므로, 관아의 뜰에 들어가서 수령에게 고하였으나 또한 치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개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인부(印符)를 어디에서 받아 왔기에 하찮은 장교조차 치죄하지 못하는가.」라고 하였으니, 이처럼 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고을 수령을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를 주도한 사람이 있기는 하였지만, 모두 가까운 친척이니 어찌 감히 꼬집어 말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김태서(金太瑞)는 공초하기를 ‘저는 가장 연로하고 무식한 탓에 고을 수령을 무함한 일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윤음을 빙자한 일과 의송을 작성한 일은 모두 현재묵 형제의 소행입니다. 남의 사주를 받아 기꺼이 장두(狀頭)가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우철(李宇喆) 등은 공초하기를 ‘올해 4월에 800여 인이 윤음을 강습하는 일로 관소(館所)에 일제히 모인다는 말을 문득 듣고서는 와서 보니, 이른바 800인은 현가(玄哥)가 아니면 모두 무뢰배(無賴輩)였습니다. 이들이 관아의 뜰로 난입하여 패악한 말을 마구 내뱉었으니, 나이 어리고 기운 약한 자가 어떻게 수령이 되겠습니까. 기타 소리 지르는 말들이 떠들썩하기 그지없었는데, 그 곡절을 물어보니 모두 현재묵의 지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재묵은 본래 흉악한 성질을 가진 자로서, 조관(朝官)을 지냈다는 위세를 빙자하

여 모든 향청의 의론을 주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현재흠에게 부탁하여 제멋대로 통문을 돌렸고, 다시 김태서를 구하여 무함하는 의송을 바쳐 고을 수령을 무함하였는데, 「배은망덕하다.〔梟獍〕」라는 2자는 취지를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형리(刑吏)에게 보낸 패자에는 종이 가득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았으니 더욱 매우 놀라웠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방도로 볼 때 억울함을 밝히는 조치가 있어야 했으나, 범죄의 진상을 포착하지 못하면 문서를 감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소 형리청(刑吏廳)에 가서 패자를 찾아내어 이를 첨부하여 순영(巡營)에 정소(呈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목을 냈으니, 제가 어찌 감히 변명하겠습니까. 8인의 집사(執事)가 돈을 거둔 일은 사소한 일에 속하나, 향안(鄉案)에 등록해 준다는 명목으로 방자하게 뇌물을 받았으니, 평소 그들의 기세를 알 수 있습니다. 전후의 문서를 모두 적발하여 바쳤으니, 저희들이 어찌 감히 황당무계한 말로 사람을 측량할 수 없는 죄로 몰아가겠습니까. 이 모두가 저희들의 공분(公憤)입니다.’ 하였습니다. 현내덕(玄內德)과 현재흠 등은 공초하기를 ‘의논할 때에 깊숙이 간여하였고, 두세 가지 일은 모두 현재묵의 지시에서 나왔습니다. 통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향회에도 참석하였으니, 앞장서서 부르짖은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안상집(安祥集) 등은 공초하기를 ‘「향안에 등록한다.〔錄鄉〕」라거나 「향안에서 삭제한다.〔黜鄉〕」라는 말도 통문 안에 들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영에 정소할 때에 현재묵이 저에게 말하기를 「100여 인의 노자를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군(本郡)의 현성은(玄成殷)에게 돈 100냥을 빌리고, 평양(平壤)에 도착한 뒤에 또 평양부에 거주하는 조가(趙哥)에게 100냥을 빌렸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일에 이미 간여하였으니, 동참한 죄를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현재묵은 공초하기를 ‘제가 과거에 급제하였고 또 외대(外臺도사(都事))를 거쳤으므로 관서 지방에서는 출중하다고 이름이 났으니, 지금 곤욕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시골에서 세도를 부린 일로 말하면, 제가 오래도록 서울에 머물러 있었고 시골에 내려갈 기회가 몹시 드물었으니, 어찌 폐단을 일으키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윤음을 받들고 들어간 일로 말하면, 김회항이 꾸짖고 모욕한 뒤에 향임들이 일제히 분노하여 제게 와서 물었으므로 답하기를 「윤음을 강습하여 밝힌다면 간척무(干戚舞)처럼 완악한 자를 교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연로한 향임들의 뜻도 모두 이와 같았으므로, 현재흠을 시켜 통문을 보내게 하였고, 저는 윤문을 하였습니다. 향안에서 삭제하는 일과 향안에 등록하는 일로 말하면, 이것이 향청 안에서 으레 행하는 일이지는 하지만 초록(抄錄)하지는 않았으니 죄로 삼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김회항의 집을 허문 일과 한광업을 구타한 일은 모두 연소한 향인들의 소행입니다. 한공우가 칼을 빼어 든 것은 아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관가의 분부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고을 안의 무뢰배가 한마음으로 결탁하여 모두 몽둥이와 칼을 들고서 제멋대로 치고 찔렸습니다. 그리하여 상처를 입은 향인의 숫자를 알 수 없을 정

도였으니, 수많은 군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수많은 무뢰배는 어찌 결탁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병기(兵器)를 잡고서 이처럼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도모한 것이 아니겠으며, 또한 무신년(1728, 영조4) 이후로 처음 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패악한 자들을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도리어 적도를 보호한 자들(反護賊徒)」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윤음을 받들고 들어갈 때에 공경히 맞이하지는 않고 장교들을 시켜 마음대로 빼앗아 들어가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과 신하 사이의 대의(大義)를 아는 것이겠습니까. 이른바 「수령과 백성의 본분은 지엽적인 일을 따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라고 한 말은 실로 윤음을 존중하여 받드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이것이 큰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순영에 정소한 일과 의송의 내용을 만드는 일은 실로 제가 주도하였으나, 「배은망덕하다.(梟獍)」라는 2자는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말입니다. 「높은 시령에 묶어 두었다.(束置高閣)」라는 4자를 그 아래 문장에 접속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마구 거두어들이는 일은 안상집의 소행이었으니, 어찌 간여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이 일은 모두 이우철의 의송에서 나온 것인데, 저와 이우철은 4대에 걸친 원수 사이이니 그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패자는 예사로운 글에 불과하여 창과 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는데도 이를 첨부하여 의송을 바쳤으니, 일찍이 뜻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죄를 삼는다면 경전(經傳)의 글에도 문제되는 곳이 있는데, 어찌 이것으로 죄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본읍 수령과는 서로 냉담한 서인(西人)과 남인(南人) 사이라서 애당초 얼굴을 모르니, 이처럼 큰 일을 당하여 어찌 수령과 백성의 본분을 돌아보겠습니까. 본 사안은 이러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하고, 발사(跋辭)에,

“전후의 문서를 모두 압수하였고 죄수들의 공초도 어긋나지 않으니, 이번에 조사한 일은 별달리 의문스러운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신중히 살피고 명백히 조사해야 할 것은 무함했는지 무함하지 않았는지의 한 가지뿐입니다. 신이 조사할 때에 먼저 범죄의 진상이 드러난 것부터 시작하되, 현재흠의 통문, 김태서의 의송, 현재묵의 패자를 첫 번째 핵심 사안으로 삼아 형신(刑訊)을 시행하지 않고 차분히 조사하니, 이른바 통문과 의송은 모두 현재묵이 지어 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사람의 공초가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았고 그도 명백하게 공초를 바쳤으니, 그가 이 옥사의 근원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통문의 내용은 고을 수령을 억박지르며 올려대려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의송의 구절에는 ‘배은망덕하다.(梟獍)’라는 2자의 지목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꾸짖고 모욕하였다고 단죄할 수는 있어도 곧장 무함한 죄로 귀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패자는 그가 손수 써서 형리 등에게 보낸 것이니, 공문(公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말한 것은 몹시 흉악하고 패악합니다. 한공우가 뽑아 든 칼은 일개 청지

기의 칼일 뿐인데 이것을 군기라고 하였고, 한무(韓武)와 김관광(金觀光)의 무리도 간여하지 않은 사람인데 도당으로 귀결시켰으며, 사나운 향임들이 상처를 입은 것은 그다지 중상이 아닌데도 살기를 띠었으며 피가 흘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말버릇입니까. ‘무신년 이후에 처음 봅니다.’라고 한 말은 매우 흉악하고 끔찍한데, 끝내 ‘도리어 적도를 보호하였습니다.(反護賊徒)’라는 4자를 곧바로 고을 수령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수령을 무함하는 데에 있었으니, 한공우가 말한 ‘제가 막중한 윤음을 빙자하였다는 말을 한 뒤에야 그들의 죄를 성토할 수 있었고 그들도 고을 수령을 무함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은 실로 긴요한 공초입니다. 조사하는 뜰에서의 행동을 보더라도, 말마다 악담을 퍼붓고 일마다 독기를 뿜어냈으며, ‘출중하다.(標榜)’라는 2자를 맨 먼저 발설한 것만도 너무나 통분한데, 조목조목 공초를 바칠 때에 감히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말로 줄곧 마구 쏘아붙이고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심지어 ‘본래 고을 수령과는 서로 냉담한 서인과 남인 사이이니, 이처럼 큰 일을 당하여 어찌 수령과 백성의 본분을 돌아보겠습니까.’라고 한 말은 ‘수령과 백성의 본분은 지엽적인 일을 따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라고 한 말에 대한 주석이니, 이 한마디 말이 바로 범죄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공우의 반대 변론과 이우철의 대질 신문이 있을 때에도 날날이 말이 꿀렸고 하나하나 말문이 막혔으며, 변명할 길이 없으면 소리를 지르는 버릇만 일삼았으니, 이렇게 흉악한 사람은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함창(咸昌)의 하리(下吏)가 칼을 빼어 든 일과 아이진(阿耳鎭)의 진졸(鎭卒)이 손찌검을 한 일은 매우 놀랍지만, 이것은 무식하고 천한 자들이 횡김에 독기를 부린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목의 경우에는 조관이었다는 핑계로 향권(鄉權)을 장악하고서 남몰래 음모를 꾸민 것이 매우 많았으며 터무니없이 무함한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향청(鄉廳)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징계하며 변방 백성의 풍속을 어떻게 진작하겠습니까.

현재흠과 김태서는 연로하여 죽을 때가 다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현재목의 사주를 기꺼이 받아들여 통문을 발론(發論)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의송의 장두(狀頭)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상이 탄로 나자 현재목에게 죄를 돌리고서 빠져나가려고 한 것은 대단히 통분합니다. 연한 때문에 형신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옥사의 체모로 논하면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현재덕은 현재목의 아우로서 함께 어울려 악행을 저지르고 종적을 숨긴 채 영읍(營邑)을 들락거리며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엄히 형추(刑推)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범죄 정황을 따져 보면 그도 엄중히 감처(勘處)해야 합니다.

김처양 등 8인은 서로 이끌고서 관아의 뜰에 들어갈 때 앞장서서 감히 마구 소리를 질렀으니, 본분을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한 버릇은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엄히 형신을 가했습니다. 그중 현사목(玄士穆)과 김용택(金龍澤)은 ‘인부를 어디에서 받아 왔는

가.’라는 말로 고을 수령을 모욕하기도 하였고 ‘김회항을 박살하겠다.’라고 관아의 뜰에서 소리를 질렀으니, 이처럼 사납고 패악한 자들에게는 등급을 올려 처벌하는 형률을 시행해야 합니다.

안상집 등 8인은 각 면(面)의 집사라는 핑계로 통문을 급히 전하여 못 향인을 선동하였으니, 이 죄는 실로 징계해야 하므로 등급을 나누어 형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중 안상집은 돈을 거두고 분주히 공로를 세운 정상이 더욱 매우 해괴하니, 또한 엄히 감처해야겠습니다.

현광옥(玄光瑬) 등 4인은 모두 현재 향임을 맡고 있는 자들로서, 한 가지 미세한 일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향청을 비우고 관아의 명령을 거역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하므로 모두 엄히 형신을 가하였습니다. 그중 현광옥은 명색이 수임(首任)인데도 이 일을 조정하지 못하고 한없는 갈등을 만들어 냈으며, 김처검(金處儉)은 향청을 비우자는 주장을 앞장서 부르짖고 사나운 향임들과 몰래 결탁하여 수많은 변괴를 빚어냈으니, 그의 변명을 이유로 참작하여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조율(照律)하여 감죄(勘罪)해야겠습니다.

김회항은 스스로 양반 서열이라는 핑계를 대고서는 사납고 외람된 짓을 버릇처럼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못 향인들을 모욕하고 관아의 뜰에서 악담을 퍼부어 많은 향인들의 유감을 불러일으켜서 이러한 변괴가 일어나게 만들었으니, 이처럼 패악한 자에게는 통렬하게 다스리는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한공우는 갑작스럽게 아비를 구원한 행동이 일반적인 심정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칼을 빼 들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후일의 폐단과 관계되니, 징계하는 벌을 시행해야겠습니다. 모두 담당 관사에서 상에게 여쭙어 처리하게 하소서.

기타 나머지 죄수는 별달리 더 조사할 단서가 없으니 모두 풀어 주겠습니다. 신은 본군에 그대로 남아 판하(判下)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급히 장계합니다.”

하였다. 형조가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대신에게 문의하니, 영종추부사 홍낙성(洪樂性)은 병 때문에 헌의(獻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은 ‘현재목이 문관이라는 핑계를 대고서는 시골에서 폐단을 일으켰으니, 죽여야 할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이 감사를 맡고 있을 때에도 익히 들어서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사하여 보고한 장계를 보면, 조사하는 뜰에서 그가 마구 쏘아붙이는 말을 한 것은 자연히 용서하기 어려운 죄로 돌아갈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손수 쓴 패자 중에서 「군기를 마음대로 꺼냈습니다.」라고 한 말과 「무신년 이후로 처음 보는 것입니다.」라고 한 말 등을 보면, 흉악하고 어그러져서 하지 못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고을 수령을 위협하여 축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겠으나, 그러한 말을 한 것이 남을 흉악한 역적으로 무함하는

죄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 죄수의 공초를 통해서도 모두 의심할 것이 없으니, 현재목의 죄에 대해서는 남을 무함한 죄에 적용하는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 외의 나머지 죄수들에 대한 처결은 어사에게 맡겨 경중에 따라 법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영돈녕부사 김이소(金履素)는 병 때문에 헌의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는 ‘사안(查案)을 반복해서 살펴보고 증인의 공초를 참고해 보면, 통문, 의송, 패자를 막론하고 모두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또 별도의 사람이 주도한 일도 아닙니다. 현재목도 이에 대해 굳게 부인한 일이 없으니, 지금 와서는 현재목 한 사람만 감단(勘斷)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흠 이하는 위협에 못 이겨서 따른 자들에 불과하니, 담당 관사에 넘겨주어 경중을 나누어서 참작하여 처결하게 해야 합니다. 남을 무고한 자에게 반좌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통문, 의송, 이른바 패자는 그 내용이 모두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니, 그가 운운한 죄로 반좌율을 적용한다면 그도 어찌 피하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무고(誣告)와 무욕(誣辱)은 단락이 현격히 다르니, 곧바로 사형을 의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절도에 형배하더라도 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행한 옥사의 체모는 매우 엄중한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춘구석에서 발호하는 교활한 무리들이 주책없이 기세를 부릴 때마다 번번이 마구 싸움을 벌여 습속이 점차 고질이 되었고 폐단이 거듭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고을 수령을 무욕하는 것도 예사로운 일로 간주하여 신하로서의 도리가 땅을 쓴 듯이 사라지고 기강이 날이 갈수록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엄히 징계하여 다잡지 않는다면, 먼 지방의 사나운 풍속을 경계하여 진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현재목을 조사한 일은 어사의 장계를 읽어 보고 여러 사람의 공초를 참고해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죄만 가득하고 용서할 수 있는 방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시골 무사에게서 소요의 단서가 시작되어 끝내는 고을 수령을 능멸하기에 이르렀는데, 상복을 입은 신분으로 그가 감히 전함(前銜)의 세력을 빙자하여 수령과 백성의 본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리끼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일당을 사주하고 무뢰배를 모집하여, 수교(首校)를 살해하려는 음모에 마음을 쏟고 고을 수령을 무함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흉악하고 패악한 말을 더할 나위 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패자를 손수 써서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 널섬을 하였고, 통문을 보내고 의송을 바친 일에서 종용(慫慂)한 자취가 탄로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기를 멋대로 꺼냈습니다.’, ‘배은망덕합니다.’, ‘무신년 이후로 처음 보는 것입니다.’ 등의 말로, 말마다 측량하기가 어려웠고 구절마다 흉악하였습니다. 예사로운 토래 사이라 하더라도 참으로 남을 무고한 데 대한 반좌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하물며 이처럼 토착민과 고을 수령의 사이는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조사하는 뜰에서 바친 공사(供辭)는 모두 거침없이 쏘아 대는 말이었고 여러 공초한 사람과

대질 신문할 때의 말은 모두 궁색하였으니, 그가 입이 열 개라도 어찌 해당 형률을 피하겠습니까. 어사가 장계에서 논열한 것은 참으로 상세히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더 이상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형(重刑)과 관계된 죄이면 문무관(文武官)에 대해서는 관찰사가 장계로 보고하고 고신(拷訊)하도록 법전(法典)에 실려 있는데, 하물며 안사 어사는 체모가 더욱 남다르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사에게 맡겨 직접 감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재흠 등은 현재목의 사주를 받은 정황을 감출 수가 없으니 연로하다고 하더라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덕은 서로 어울려 함께 악행을 저질렀으니 매우 해괴합니다. 김처양과 안상집 등은 관아의 뜰에서 앞장서서 모욕하기도 하였고 같은 도당에게서 돈을 거두기도 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오도하였으니, 죄상이 악랄합니다. 현광옥 등은 감히 관아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러한 사변을 불러왔습니다. 김처검은 사나운 향임들과 남몰래 결탁하였으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김회항은 향인을 능멸하여 이러한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한공우는 칼을 빼 들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비를 구원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참작하여 용서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후일의 폐단과 관계되니 또한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각 사람 등은 모두 위협에 못 이겨서 따른 자들이고 범한 죄가 가벼우니 조사하여 보고한 장계에서 논열한 대로 감처하라고 안사 어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어사의 장계를 보니 본 사안의 전말을 알 수 있겠다. 어사의 장계에서 말한 ‘통문의 내용은 음박지르며 올려대려던 계획에 불과하고, 의송의 구절은 꾸짖고 모욕하였다고 단죄할 수는 있어도 곧장 무함한 죄로 귀결시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은 간략하면서도 할 말을 다 했을 뿐만이 아니다. 그의 공초에서도 상대 쪽이 칼을 빼어 든 일에 대해 ‘무신년 이후로 처음 보는 일입니다.’라고 하였으니, ‘군병을 동원하여……’라고 한 것은 고을 수령을 가리켜서 배척한 말이 아닌 것 같다. 따라서 남을 무함하고 난리를 모의한 데 대한 형률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나 먼 지방의 풍속이 지극히 사납고 명분이 날로 무너지니, 촉(蜀)을 다스리던 법을 적용하여 배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률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후일을 징계하고 다른 사람을 단속하겠는가. 다만 그 내력을 추구해 보면 일종의 향전(鄉戰)이라고 하겠다. 이우철이 패자를 첨부하여 의송을 바치기까지 한 것도 어찌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적인 유감을 풀고 기회를 틈타 뒤흔들어 보려는 계획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우철은 말이 정직한 편이다. 함께 감처하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소 다르다. 사형은 지나치니, 죄인현재목을 어사의 장계에서 논열한 대로 감단하되, 율명(律名)도 우의정의 의견대로 시행하라. 그 나머지 각 사람 등에 대한 처결은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 어사는 등급을 나누어 추문하여 죄를 다스린 뒤에 즉시 돌아오는 길에 올라 체류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라고 파

발을 보내 알리게 하라.”하였다.

[주-D001] 윤음(綸音): 평안 감사 박종갑(朴宗甲)의 장계에 ‘봄에 내린 윤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해 1월 1일에 내린 윤음을 가리킨다. 이 윤음에서는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간행하게 된 경위 등을 밝혔다. 《오륜행실도》는 이해에 정조가 규장각에 명하여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를 합하고 수정하여 간행한 책이다. 《日省錄 正祖 21年 1月 1日, 6月 10日》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제자료 <http://e-kyujanggak.snu.ac.kr> 검색일:2011. 9. 30.》

[주-D002] 인부(印符)를 …… 못하는가: 인부는 수령에 제수된 사람이 차는 관인(官印)과 부신(符信)으로, 여기에서는 수령을 조롱하는 뜻에서 이처럼 말한 것이다.

[주-D003] 배은망덕하다: 김태서(金太瑞) 등 103인이 연명하여 바친 의송에 나오는 말로 “배은망덕한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윤음을 강습하여 백성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을 수령은 윤음을 높은 시렁에 묶어 두었습니다.〔若非梟獍之性 則孰不欲講誦牖民 而本官 則束之高閣〕”라고 하였다. 이 의송은 **현재묵**이 지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구절은 **현재묵**이 수령을 무함한 말 중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日省錄 正祖 21年 6月 10日》

[주-D004] 8인의 …… 받았으니: 개천군의 향인(鄉人)들이 향회(鄉會)를 연다는 명목으로 각 면(面)에 통문을 보낼 때, 8인의 집사(執事)를 차출하여 ‘향안에서 삭제하겠다.〔黜鄉〕’라는 말로 위협하기도 하고 ‘향안에 등록해 주겠다.〔錄鄉〕’라는 말로 유인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돈을 거두어들였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고 한다. 《日省錄 正祖 21年 6月 10日》

[주-D005] 간척무(干戚舞): 왼손에 방패(干)를 들고 오른손에 도끼(戚)를 들고 추는 무무(武舞)로, 우(禹) 임금 때 묘족(苗族)이 명을 거스르자 우 임금이 이 춤을 추니 묘족이 70일 만에 감동하여 복종했다고 한다. 《禮記 樂記》

[주-D006] 무신년 …… 일: 무신년의 일이란 영조가 즉위한 뒤로 권력 투쟁에서 노론 세력에게 밀린 남인과 소론이 주도하여 일으킨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말한다. 이들은 경종이 독살되었으므로 복수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서 밀풍군(密豐君) 이탄(李坦)을 추대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였다. 《英祖實錄 4年 3月 15日, 16日, 18日, 20日, 26日, 27日》 **현재묵**의 이 말은 고을 수령을 무신년의 역적과 동일한 사람으로 지목하여 무함한 말로

받아들여졌다.

[주-D007] 높은 …… 두었다: 김태서(金太瑞) 등 103인이 연명으로 바친 의송(議送)에서 “배은망덕한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윤음을 강습하여 백성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을 수령은 윤음을 높은 시령에 묶어 두었습니다.[若非梟獍之性 則孰不欲誦誦牖民 而本官 則束之高閣]”라고 하였다. 《日省錄 正祖 21年 6月 10日》

[주-D008] 제가 본읍 수령과는: 원문은 ‘渠且與本倅’인데, 《일성록》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표’를 연문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주-D009] 함창(咸昌)의 …… 일: 함창 현감 박재순(朴載淳)이, 창곡(倉穀)을 훔치고 관전(官錢)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죄로 하리(下吏) 오중권(吳重權)·오계권(吳啓權) 형제를 잡아 가두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들이 밤을 틈타 감옥을 탈출하여 도피하였다가 자수하였다. 현감이 오중권은 우선 보방(保放)하고 오계권은 장(杖)을 치고 도로 가두었는데, 오계권이 옥중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그러자 그의 형 오중권과 오재권(吳再權), 조카 오상관(吳相寬) 등이 그의 처와 서모(庶母)를 거느리고 각각 칼을 들고서 관아의 뜰로 난입하였다가 붙잡혔다. 《日省錄 正祖 19年 8月 12日》

[주-D010] 아이진(阿耳鎭)의 …… 일: 아이진의 진졸(鎭卒) 최봉덕(崔奉德)이 아이 첨사(阿耳僉使) 이신형(李信馨)을 구타한 사건을 가리킨다. 《日省錄 正祖 19年 7月 8日》

[주-D011] 문무관(文武官)에 …… 있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추단(推斷)〉에 보인다.

[주-D012] 촉(蜀)을 다스리던 법: 유비(劉備)가 성도(成都)를 함락시키고 익주(益州)를 차지한 뒤에 제갈량(諸葛亮)이 유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형법을 엄히 적용하자, 사람들이 이를 원망하였다. 이에 법정(法正)이 고조(高祖)가 관중(關中)에 들어가서 3가지의 간략한 법만 시행한 예를 거론하며 형법을 완화할 것을 간하였는데, 제갈량은 “내가 지금 먼저 법으로 위엄을 보여 주는 것은 법이 행해지면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後漢紀 卷30 孝獻皇帝紀》《諸葛忠武書 卷8 法劍》

[주-D013] 향전(鄉戰): 향청(鄉廳)의 향임(鄉任) 선발을 둘러싸고 구향(舊鄉)과 신향(新鄉)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말한다. 향청은 조선 전기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족(士族)의 주도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향촌(鄉村)의 자율 기구였으나, 후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자율성이

사라지고 수령에게 예측되어 지방행정 기구로 변모해 갔다. 향청의 이러한 성격 변화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새롭게 부를 축적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는 세력, 즉 구향과 신향의 향임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희권,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구, 집문당, 1999》

준혁 俊赫, 22세. 사회주의운동가.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후보위원

일제 치하 대구사범학교에서 교육받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으며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 서기,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회 후보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 정치인.

1906(고종43, 족보에는 1901년 출생으로 되어있다) 평안남도 개천군의 빈농가정에서 출생하였고, 1919년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협성학교·중동학교를 거쳐 1924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였다. 192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이미 연희전문학교 재학시절부터 사회주의에 심취하였다.

1929년 5월 대구사범학교 교사가 되어 심리학·영어·한문·교육사를 가르치다 1930년 가을부터 교내 비밀결사인 사회과학연구그룹을 지도했고, 1931년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야학을 설치했다. 1932년 4월에는 학생들과 항일 동맹휴학을 주도했고 학생들의 독서모임을 이끌며 독립의식을 고취하다 적발돼 그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위 ‘4대 비밀결사사건’의 주인공으로 공판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의 재판정에 섰다. 4대 비밀결사사건은 ‘대구사범 현준혁 교유(敎諭)의 적화(赤化)계획사건’, 대구고보(高普)의 사회과학연구회사건 ‘반제반전(反帝反戰)빠라사건’, 대구상업학교의 프로과학조선 제1호지국사건’으로 당시 언론을 장식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6년간 복역했고 교직에서 파면됐고 출옥 뒤 공산주의 활동 등으로 여러 차례 감옥을 들락거렸다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1933년 개천 및 영변 일대의 적색농민조합 준비활동을 지도했다. 1934년 9월 부산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했고, 1935년 경 평남 개천협동조합을 좌익소비조합으로 전환시켰다. 이 무렵 재차 체포되어 1936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이 사건으로 교사직에서 파면되자 귀향하였다.

사회주의로 학생들에게 독립의식을 일깨웠을 뿐 아니라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 있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 중 일부가 1945년 8월 평안남도에서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를 결성할 때 최고책임자인 서기가 되었다. 같은 해 9월 여운형(呂運亨)의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되었다.

국내파 공산주의자로, 박헌영(朴憲永)의 정치노선을 따르는 한편, 민족주의 진영의 조만식(曹晩植)과도 제휴하고 있었다. 당시 진보적 지식인층과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에게 신망이 두터워 북한지역에서는 소련군 정치사령부가 지원하는 김일정보다 유력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이에 김일성과 소련군 정치사령부는 같은 해 9월 15일 개최된 조선공산당 평남지구 확대위원회에서 그의 정책과 노선에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적인 결정서가 채택된 지 2주일이 채 안 된 1945년 9월 28일 낮, 조만식과 함께 소련군 정치사령부 로마넨코(Romanenko, A.A.) 소장에게 들렀다가 트럭을 타고 돌아가던 중 평양시청 앞에서 괴한의 총격에 암살되었다. 그의 피살에 대해서는 소련군정사령부와 김일성이 사주했다는 설과 남한의 우익들이 저지른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참고문헌

『스티코프 비망록』(중앙일보사 한국현대사연구소)/『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1996)/『한국공산주의운동사』제2권 (스칼라피노·이정식, 1986)/『조선노동당약사』(이정식, 1986)/『남로당연구』I (김남식, 1984)/『북한총람(北韓總覽)』(배한연구소, 1983)

기정 基正, 23세.

자 직재(直哉), 1880년(고종高宗17년)생 족보에 ‘한말 의암류인석 휘하의병간부 중국 서간도 류하현 삼원포지역 맹활약(韓末 毅菴柳麟錫麾下義兵幹部 中國西間島柳河縣三源浦地域猛活躍)1919년년기미(己未)11월초 평양 공성단조직부장취임 군자금모집 군자금 오천원 독립군전달(平壤 共成團組織部長就任 軍資金募集 軍資金五千圓 獨立軍傳達)1953년졸’ 이라 기록되어있다. 풀이해보면, 한말 의암 유인석 휘하의 의병 간부로서 중국 서간도 류하현 삼원포 지역에서 맹활약하였다. 1919년 11월 초 평양 공성단 조직부장으로 취임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군자금 5천원을 독립군에 전달하였다. 1953년 2월 5일 돌아가셨다. 현승중 총리의 양부(養父)이다.

승중 勝鍾, 24세. 국무총리, 성균관대 총장, 고려대 이사장, 제3대 연주현씨대종회장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제24대 국무총리, 헌정사상 최장수 정치인. 1919년 평안남도 개천군에서 부 현기명(玄基明)의 4형제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4살 때, 자식없이 별세한 독립운동가 큰아버지 현기정의 양자로 입적했다. 승중은 1938년 3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에 응시해 합격하고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41년 경성제대예과를 수료하고 법문학부 법학과로 진학하여 1943년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며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1943년 10월부터 시작된 일제의 학도 특별지원병 제도모집으로 고향에서 가족친지들에게 숨어 폐만 끼치게 되자 학도 특별지원병에 지원했다.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간부후보 시험에 선발되어 중국 난징의 중화민국 중앙군관학교자리에 세워진 일본 육군 예비사관학교에 입교하여 6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예비사관학교를 마치고 일본제국 육군견습사관으로 임관했다. 중국내 독립병당 예하 2소대장이 되었고, 중국과 대규모 교전정 중 수비대장 역할을 했다. 중국 팔로군과 상하이 근교 난통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규모 교전을 벌였다. 승중은 수비대장 역할을 했으며, 그로부터 1주일 뒤 일제의 패망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전쟁이 끝났음을 알게 되었다.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던 장개석은 일본군에게 무장과 군수물자, 위수지역을 중공군에 빼앗기지 않도록 국민당군이 접수하러 갈 때까지 주둔지에서 계속 방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했다. 현승중은 대대장에게 40여 명 정도의 조선인 병사들로 별도 소대를 편성케 해달라고 건의하여 조선인 소대의 소대장을 맡아 학병 동료인 김병률과

함께 한글, 한자, 민요 등을 가르치며 자체적으로 군사훈련까지 실시했다. 그렇게 5개월 정도가 지나고서야 중화민국 군병력이 무장해제를 시키자, 상하이 교외의 집결지까지 이동하게 되었으며, 집결지에서 일본인의 전송을 받으며 일본군에서 분리되었다. 이때 현승종은 학병 출신 동지들과 함께 동포들을 모두 귀환시킨 후 보급, 경리의 책임을 맡기도 하고 일본 육군 사령부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얻어내 조선 장정들에게 도움이 되게 했다.

평양의 처가에 도착해 처자와 재회하였으나 지주 출신에다 제국대학까지 나왔고 학병을 다녀온 처지라 이북에서 반동분자로 분류될 조건이라 고향에 가보지 못하고 평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평양에서 소련군의 행태를 직접 목격했고,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간파하고 있었던 승종은 경성제대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대학 대선배이자 북한 사법부장 최용달의 함께 일하자는 권유를 뿌리쳤다. 그리하여 평양을 떠나 1946년 월남하게 되었다.

승종은 1946년 9월부터 1974년까지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29년간 교수를 역임했다.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로마법개론’, ‘로마법원론’, ‘법사상사’, ‘서양법제사’ ‘민법’ ‘비교법입문’ ‘로마법’ ‘게르만법’ 등의 책을 저술했으며, 법사상사, 법사학, 비교법 및 민법분야에서 연구업적을 남겼다. 5.16 군사 정변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고대생들의 데모가 연일 이어졌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수많은 고대생들을 구속, 강제 징집하려고 버리고 있었다.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제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나서자 현승종은 스크럼을 짰 제자들 앞에 나가 “정 나가고 싶으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외치면서 그냥 드러누워버림으로써 고대생들의 대량 구속을 막았다. 5년 7개월 동안 고대 학생처장직을 수행한 뒤, 고려대에 교양학부장과 도서관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차기 총장으로 임명될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답게 재단이사회와 사이가 틀어진 때문이라는 세간의 추측을 남긴 채 고대를 떠나 성균관대학교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성균관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구조 조정 등 온갖 악역을 도맡았는데 그런 곳은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였다. 1984년에는 한림대 교수와 학장을 거쳐 1989년부터 1992년까지 한림대학교총장을 맡았다. 성대총장과 한림대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학사 행정 실무담당자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는 등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실현했다. 승종은 1991 교총 회장으로 일하면서 김영삼과 김대중으로부터 우수교원확보법,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교육시설투자촉진법 제정 지원 약속을 이끌어냈고, 결국 그러한 특별법들을 통과시켰다. 교원처우개선과 수당지급 체계 개선 등 현재 교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그 당시 확립된 것이다.

승종은 1992년 10월 노태우정부의 중립내각 구상에 따라 국무총리직을 맡았다. 총리직에 취임한 후, 짧은 기간이지만 혼란스런 정국을 안정시켰다. 건국대 이사장, 인촌기념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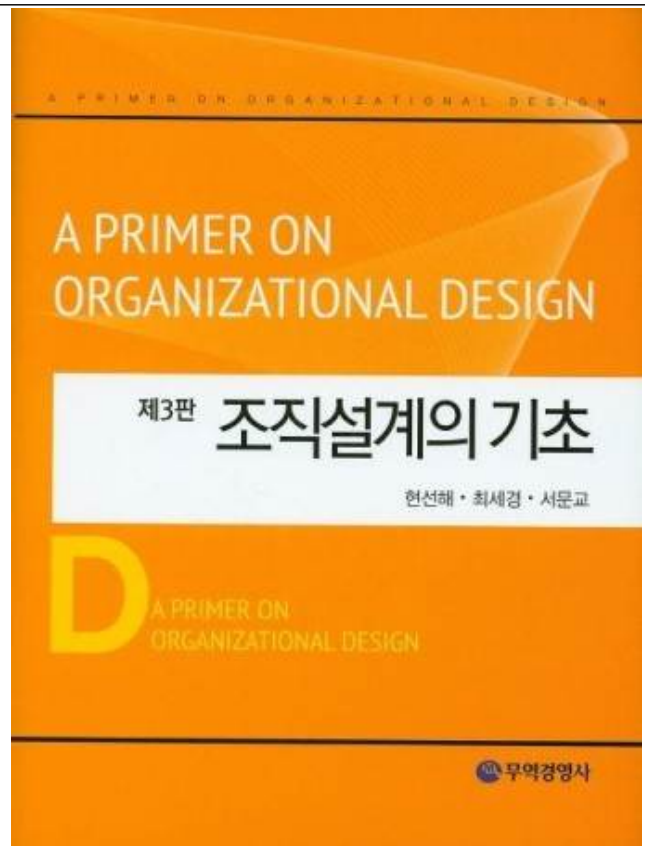
장을 거쳐 2005년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2008년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1994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출범하였을 때 한국 유니세프 회장이 되었으며 한국유니세프 회장직을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수행했다.

승종은 교육행정가로서의 행적이 돋보이는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보수주의적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색을 그리 강하게 드러내지 않아 보수-진보 양쪽에서 무난하게 수용되었다. 성균관대, 한림대, 건국대, 고려대 총장과 이사장직을 역임할 동안 대부분의 판공비를 그대로 반납하는 등 고위직을 계속 연임했지만 청렴결백한 생활을 했다. 평범한 서민 동네에서 말년까지 계속 살았을 정도다. 2012년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 자랑스런 한국교총인상, 2006년 제8회 인제인성대상, 2005년 유일한 상을 수상했다. 2020년 102세로 돌아가셨다.



선해 宣海, 25세.

승종의 3남, 1958년생, 경영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대중회 부회장



호종 浩鍾, 24세.

1916년병진(丙辰)생, 현승종의 생부(生父)인 기명(基明)의 3남으로 현승종의 셋째 형. (株)한미타올창립 회장

진해 珍海, 25세.

호종(浩鐘)의 아들, 고대교수, 의학박사, 1941년생, 고대의대 교수, 고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고려대학부속병원장, 현진해내과의원(원장)

현진해내과의원 원장(진해)



현, 그리고 호종과 호종은 나누어 교육을 받았습니
다. 그렇기에도 주어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리 이 생활 이외의 곳에서 아르바이트 삼아 내시경
지식을 하는 교수들을 찾아다니기 지름을 하며 모든
내시경을 숙달시켰습니다.

현, 원장은 이제 그치지 않고 현재 30대가 육군을
한 다음에도 피가 30이 된 동안 분당에 대해 병원 소
환자에게 교수들이 내시경을 통해 모든 신진과 자
영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와 알려주고, 피
분이 가는 부분에 대한 다음 날 해당 교수들에게
알려보며 임상평가를 받게끔 하고 있다.

"지금 생애에 모든 내시경을 익히는 게 쉬운 일은
도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익히
고 있습니다. 할 게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고대 대학 같은 곳을 온 분당에 대해 병원 소
환자에게 알리거나 교수들한테서 모든 것을 배우
고, 그 동안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 바
우라는 교수는 이후에도 내과 '현진해' 되어 모든
교과에 열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해 이후에
이 교수는 내과 해 온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
니다. 덕분에 모든 학제별과 과에서 원장을 1명
이상 보낸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
일이죠."

현 원장은 3년 3개월 만에 모든 연구를 마치고 귀국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제도 준비를 마
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대학과 병원
을 찾아다니며 각종의 교수들이 각종을 열 내과
내시경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장도 함께
하는 내시경을 이용해, 원장들이 같이 지면 같은
수술에 하는 중세적인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치료
할 정도로도 우리나라 소환자에게 최고의 내시경을
알리고, 이 분야의 모든 의사들이 원장에게
30년과 40년째 교수들한테서 모든 것을 배우고 있다.

30년과 40년째 교수들한테서 모든 것을 배우고 있다.



Hyun's Digestive Clinic & Center for Health promotion

현진해 내과

현진해 내과 현일식 부원장

JKMS에 연구논문 게재

Interobserver Variability and Accuracy of High-Definition Endoscopic Diagnosis for Gastric Intestinal Metaplasia among Experienced and Inexperienced Endoscopists
(위장상피화생의 고해상도 내시경 진단에서 관찰자 간의 일치도 연구)

JKM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 대한의학회에서 영문으로 발간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의학술지로서 SCI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재해부는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 평가기준이다.

www.doctorhyun.com / myhealth.blog.me / 02-3473-6611



경호 慶鎬, 27세. 1950년생, 경기도 군포시 행정국장, 대중회 이사

연목 淵穆, 24세. 자 재우(宰佑), 1927년생, 재우사(宰佑社) 대표, 대중회 고문

인종 仁鍾, 24세. 1932년생, 대종회 이사

승호 昇浩, 25세. 1962년생, 세진 대표, 대종회 이사

원영 元榮, 27세. 자 영섭(榮涉), 1967년생, 대종회 이사

성일 誠一, 28세. 1941년생, 제주지방경찰총장, 기흥CC 대표, 대종회 이사